

의안 번호	1586	【울산광역시 중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】 심사보고서
----------	------	---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9. 11. 8.(금)
- 나.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9. 11. 8.(금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9. 12. 5.(목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이 조례는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2항에 근거하여
- 화재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을 규정(안 제1조)
 -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
- 용어의 의미 정의(안 제2조)
 - “화재취약계층” 이란 용어의 의미 정의
- 구청장의 책무 및 설치 지원(안 제3조~안 제4조)
 - 화재취약계층의 화재사고 예방 및 설치비용 지원
- 지원대상 및 범위(안 제5조)
 -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으로 한정
 - 지원범위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로 한정
- 지원신청 등(안 제6조)
 - 신청서 제출 및 지원 대상자 결정

다. 근거법규

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 ·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」

제8조제2항(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유경달)

- 상위법령인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 ·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화재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과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지원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
-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,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,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 거 법 규

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

제8조(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)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1.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
2.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(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)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(이하 "주택용 소방시설"이라 한다)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③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.

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」

제13조(주택용 소방시설)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"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.